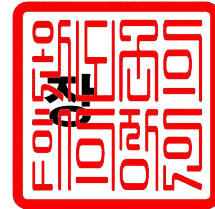


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

「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.

2026년 9월 23일

완 도 군 의 회 의



1. 조 례 명: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
개정조례안

2. 발 의 자: 박병수 의원

3. 개정이유

- 읍·면별로 상이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 종료일을 통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, 임기 개시일을 1월 1일로 하고 임기 만료일을 그 다음 해 12월 31일로 명확히 규정함 (안 제17조제7항)
-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 등의 임기 만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임기를 연장하도록 임기에 관한 특례를 둬(안 부칙 제2조)

5. 관련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7조의2(주민자치회의 설치 등)

6. 조례안예고기간: 2026. 9. 23. ~ 2026. 9. 27.(5일간).

7. 의견제출

-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 :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(의정지원1팀)

-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/ (우) 59121

(전화: 061-550-5938, FAX: 061-550-5907)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서면 · 전화 · 팩스 · 직접방문 등

8. 기타

○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1팀(전화: 061-550-5938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 1부.

2.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끝.

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조례안 예고명	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	
의견 제출자	성명 (개인/단체)		전화번호	
	주소			
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				
「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. 년 월 일 제출자 (서명 또는 인)				
완도군의회위원장 귀하				

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7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임기 개시일은 1월 1일로 하고 임기 만료일은 그 다음 해 12월 31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 등의 임기에 관한 특례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 제7항에 따라 재임 중인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 중 임기 만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 (구성 등) ① ~ ⑥ (생략)	제17조 (구성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 다만,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	⑦ ----- ----- ----- . <u>이 경우 임기 개시일은 1월 1일로 하고 임기 만료일은 그 다음 해 12월 31일로 한다. ---.</u>
⑧ (생략)	⑧ (현행과 같음)

지방자치법

제17조의2(주민자치회의 설치 등)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·면·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(이하 “자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,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1.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
2.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탁한 사항

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(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)이 위촉한다.

⑤ 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.

⑥ 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·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⑦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

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⑧ 자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치적 목적이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⑨ 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⑩ 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